

# [정정 안내]

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지난 2026년 3월 10일자로 발송해 드린 ‘제6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’의 내용 중 안건 내용은 변동이 없으나, 안건의 상세 분리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다시 안내드립니다.  
주주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
## ■ 정정 사유

### - 집중투표배제 조항 안건 분리 상정

기존 제3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안건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으나, 상법 제 547조의7에 의거 분리 상정

## ■ 정정 사항

### 1. 본문 정정

#### 3. 회의목적사항

<부의안건>

제3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정정 전	정정 후
제3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	<b>제3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제3-1호 의안 :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</li><li>- 제3-2호 의안 :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대리권 증명 방법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</li><li>- 제3-3호 의안 : 독립이사제도 도입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</li><li>- 제3-4호 의안 :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선·해임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</li><li>- 제3-5호 의안 : 이외 사항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</li></ul>

### 2. 붙임 서류 정정

#### (1) 정정 전

붙임 : 제3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현 행 (변경 전)	개 정 (변경 후)	변경 목적
<b>제 21 조 (소집지)</b> ① (생략) ② (신설)	<b>제 21 조 (소집지와 개최방식)</b> ① (현행과 동일) ② <u>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 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.</u>	전자주총 도입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'27년 1월 시행예정)
<b>제 27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</b> ① (생략)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<u>서면(위임장)</u> 을 제출하여야 한다.	<b>제 27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</b> ① (현행과 동일)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<u>서면 또는 전자문서</u> 를 제출하여야 한다.	전자주총 도입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'27년 1월 시행예정)

현 행 (변경 전)	개 정 (변경 후)	변경 목적
<p><b>제 30 조 (이사의 수)</b></p> <p>① 이 회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, <u>사외이사는</u>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.</p> <p>② 이사는 그 일부를 <u>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</u>에서 추천한 비상근 <u>사외이사</u>로 할 수 있다.</p>	<p><b>제 30 조 (이사의 수)</b></p> <p>① 이 회사의 <u>이사는</u>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, <u>독립이사는</u> 3명 이상으로 하되,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.</p> <p>② 이사는 그 일부를 <u>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</u>에서 추천한 비상근 <u>독립이사</u>로 할 수 있다.</p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‘26년 7월 시행예정)</p>
<p><b>제 31 조 (이사의 선임)</b>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<u>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<b>제 31 조 (이사의 선임)</b></p> <p>①~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(삭제)</p>	<p>집중투표제 의무화 관련 상법 개정 선제 반영 (‘26년 9월 시행예정)</p>
<p><b>제 31 조의2 (사외이사 후보의 추천)</b></p> <p>① <u>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</u>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<u>사외이사</u> 후보를 추천한다.</p> <p>② <u>사외이사</u>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<u>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</u>에서 정한다.</p>	<p><b>제 31 조의2 (독립이사 후보의 추천)</b></p> <p>① <u>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</u>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<u>독립이사</u> 후보를 추천한다.</p> <p>② <u>독립이사</u>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<u>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</u>에서 정한다.</p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‘26년 7월 시행예정)</p>
<p><b>제 32 조 (이사의 임기)</b></p> <p><u>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</u></p>	<p><b>제 32 조 (이사의 임기)</b></p> <p><u>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.</u></p>	<p>이사 임기만료 정기주주총회일로 명확화</p>
<p><b>제 33 조 (이사의 보선)</b>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<u>사외이사가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b>제 33 조 (이사의 보선)</b></p> <p>①~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<u>독립이사가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‘26년 7월 시행예정)</p>
<p><b>제 35 조의2 (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</b></p> <p>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(중략) 최근 1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 (사외이사의 경우는 4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 35 조의2 (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</b></p> <p>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(중략) 최근 1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 (독립이사의 경우는 4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‘26년 7월 시행예정)</p>
<p><b>제 40 조의2 (위원회)</b></p> <p>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.</p> <p>1. <u>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</u></p> <p>2~3. (생략)</p> <p>②~③ (생략)</p>	<p><b>제 40 조의2 (위원회)</b></p> <p>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.</p> <p>1. <u>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</u></p> <p>2~3.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~③ (현행과 동일)</p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‘26년 7월 시행예정)</p>

현 행 (변경 전)	개 정 (변경 후)	변경 목적
<p><b>제 43 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</b></p> <p>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<u>사외이사</u>이어야 하고, <u>사외이사</u> 아닌 위원은 상법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 본 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</p> <p>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 <p>⑥ <u>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</u> 주식을 보유하는 자, <u>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u></p> <p>⑦ (생략)</p> <p>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<u>사외이사</u>이어야 한다.</p>	<p><b>제 43 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</b></p> <p>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<u>독립이사</u>이어야 하고, <u>독립이사</u>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 본 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</p> <p>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(<u>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</u>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 <p>⑥ (삭제)</p> <p>⑦ (현행과 동일)</p> <p>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<u>독립이사</u>이어야 한다.</p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'26년 7월 시행예정)</p> <p>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'26년 9월 시행예정)</p> <p>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'26년 7월 시행예정)</p>
<p><b>제 47 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)</b>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.</p> <p>1.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</p> <p>2.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</p> <p>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⑥ (생략)</p> <p>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 47 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)</b></p> <p>①~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④ (삭제)</p> <p>⑤ (삭제)</p> <p>⑥ (현행과 동일)</p> <p>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ESG(지배구조) 개선 목적 :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에서만 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주권 강화</p>

현 행 (변경 전)	개 정 (변경 후)	변경 목적
(신설)	<p><b>부칙 (2026.3.26)</b></p> <p><u>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(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3월 26일)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2조 (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) 제21조 및 제27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3조 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30조, 제31조의2, 제33조, 제35조의2, 제40조의2, 제43조(제4항 및 제5항은 제외)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4조(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/u></p> <p><u>제5조(감사위원회 선·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제43조 제5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 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상법 시행시기 따른 경과규정 마련</p>

(2) 정정 후

붙임 : 제3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제3-1호 의안 :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현 행 (변경 전)	개 정 (변경 후)	변경 목적
<b>제 31 조 (이사의 선임)</b> ①~② (생략)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	<b>제 31 조 (이사의 선임)</b> ①~② (현행과 동일) ③ (삭제)	집중투표제 의무화 관련 상법 개정 선제 반영 ('26년 9월 시행예정)
(신설)	<b>부칙 (2026.3.26)</b> 제4조(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	상법 시행시기 따른 경과규정 마련

제3-2호 의안 :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대리권 증명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현 행 (변경 전)	개 정 (변경 후)	변경 목적
<b>제 21 조 (소집지)</b> ① (생략) ② (신설)	<b>제 21 조 (소집지와 개최방식)</b> ① (현행과 동일) ②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 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.	전자주총 도입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'27년 1월 시행예정)
<b>제 27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</b> ① (생략)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	<b>제 27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</b> ① (현행과 동일)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전자주총 도입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'27년 1월 시행예정)
(신설)	<b>부칙 (2026.3.26)</b> 제2조 (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) 제21조 및 제27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상법 시행시기 따른 경과규정 마련

제3-3호 의안 : 독립이사제도 도입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현 행 (변경 전)	개 정 (변경 후)	변경 목적
<p><b>제 30 조 (이사의 수)</b></p> <p>① 이 회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, <u>사외이사는</u>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.</p> <p>② 이사는 그 일부를 <u>사외이사</u>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비상근 <u>사외이사</u>로 할 수 있다.</p>	<p><b>제 30 조 (이사의 수)</b></p> <p>① 이 회사의 <u>이사는</u>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, <u>독립이사는</u> 3명 이상으로 하되,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.</p> <p>② 이사는 그 일부를 <u>독립이사</u>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비상근 <u>독립이사</u>로 할 수 있다.</p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'26년 7월 시행예정)</p>
<p><b>제 31 조의2 (사외이사 후보의 추천)</b></p> <p>① <u>사외이사</u> 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<u>사외이사</u> 후보를 추천한다.</p> <p>② <u>사외이사</u>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<u>사외이사</u>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.</p>	<p><b>제 31 조의2 (독립이사 후보의 추천)</b></p> <p>① <u>독립이사</u> 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<u>독립이사</u> 후보를 추천한다.</p> <p>② <u>독립이사</u>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<u>독립이사</u>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.</p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'26년 7월 시행예정)</p>
<p><b>제 33 조 (이사의 보선)</b>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<u>사외이사</u>가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 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 33 조 (이사의 보선)</b></p> <p>①~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<u>독립이사</u>가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 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'26년 7월 시행예정)</p>
<p><b>제 35 조의2 (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</b></p> <p>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(중략) 최근 1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<u>사외이사</u>의 경우는 4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 35 조의2 (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</b></p> <p>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(중략) 최근 1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<u>독립이사</u>의 경우는 4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'26년 7월 시행예정)</p>
<p><b>제 40 조의2 (위원회)</b></p> <p>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.</p> <p>1. <u>사외이사</u> 후보추천위원회</p> <p>2. 감사위원회</p> <p>3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</p>	<p><b>제 40 조의2 (위원회)</b></p> <p>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.</p> <p>1. <u>독립이사</u> 후보추천위원회</p> <p>2. 감사위원회</p> <p>3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</p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'26년 7월 시행예정)</p>
<p><b>제 43 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</b></p> <p>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<u>사외이사</u>이어야하고, <u>사외이사</u> 아닌 위원은 상법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<u>사외이사</u>이어야 한다.</p>	<p><b>제 43 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</b></p> <p>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<u>독립이사</u>이어야하고, <u>독립이사</u>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<u>독립이사</u>이어야 한다.</p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'26년 7월 시행예정)</p>
<p>(신설)</p>	<p><b>부칙 (2026.3.26)</b></p> <p>제3조 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30조, 제31조의2, 제33조, 제35조의2, 제40조의2, 제43조(제4항 및 제5항은 제외)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상법 시행시기 따른 경과규정 마련</p>

현 행 (변경 전)	개 정 (변경 후)	변경 목적
<p><b>제 43 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</b></p> <p>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<u>1명</u>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 본 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</p> <p>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 <p>⑥ 사외이사가 아닌 <u>감사위원회</u>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	<p><b>제 43 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</b></p> <p>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<u>2명</u>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 본 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</p> <p>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(<u>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</u>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 <p>⑥ (삭제)</p>	<p>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26년 9월 시행예정)</p> <p>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26년 7월 시행예정)</p>
<p>(신설)</p>	<p><b>부칙 (2026.3.26)</b> 제5조(감사위원회 선·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제43조 제5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 부터 시행한다.</p>	<p>상법 시행시기 따른 경과규정 마련</p>



주주각위

# 제6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
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우리회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6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※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## ■ 아 래 ■

1.일 시 : 2026년 3월 26일 (목) 오전 10시

2.장 소 : 경남 양산시 총렬로 355 벅센타이어주식회사 본사 강당

### 3.회의목적사항

<보고안건> 감사보고, 영업보고,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
<부의안건>

제1호 의안 : 제68기(2025년 1월 1일 ~ 2025년 12월31일)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
제2호 의안 : 이익잉여금 처분(안) 승인의 건

제3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※세부내용은 붙임 참조)

- 제3-1호 의안 :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- 제3-2호 의안 :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대리권 증명 방법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- 제3-3호 의안 : 독립이사제도 도입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- 제3-4호 의안 :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선·해임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- 제3-5호 의안 : 이외 사항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제4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

- 제4-1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수미 선임의 건

성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추천인	최대주주와의관계	감사위원 분리선출 여부	비고
정수미	1981년02월18일	現, 한국회계학회 상임이사 現,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	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	없음	분리선출	재선임 (재무전문가)

- 제4-2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재홍 선임의 건

성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추천인	최대주주와의관계	감사위원 분리선출 여부	비고
김재홍	1969년03월26일	現, CJ제일제당 자문 前, CJ제일제당 전략추진실 부사장	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	없음	분리선출	신규선임

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제6호 의안 : 임원 퇴직금 규정 일부 변경의 건 (※세부내용은 붙임 참조)

### 4.전자투표에 관한 사항

당사는 주주님들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를 이번 주주총회에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주주총회 당일 직접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들께서는 전자투표를 이용하시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전자투표시스템

- 인터넷 주소 : <https://evote.ksd.or.kr>
- 모바일 주소 : <https://evote.ksd.or.kr/m>
- ※ 해당 전자투표시스템의 관리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

나. 전자투표 행사기간 : 2026년 3월 16일 09시 ~ 2026년 3월 25일 17시

- 첫날(오전 9시 부터 행사) 및 마지막날(오후 5시 까지 행사)을 제외한 투표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

다.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

-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: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 
(K-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)

라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

5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3월 12일

 **넥센타이어주식회사** 

대표이사 김현석 (직인생략)

**붙임 : 제 3 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**

제3-1호 의안 :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현 행 (변경 전)	개 정 (변경 후)	변경 목적
<b>제 31 조 (이사의 선임)</b> ①~② (생략)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	<b>제 31 조 (이사의 선임)</b> ①~② (현행과 동일) ③ (삭제)	집중투표제 의무화 관련 상법 개정 선제 반영 ('26년 9월 시행예정)
(신설)	<b>부칙 (2026.3.26)</b> 제4조(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	상법 시행시기 따른 경과규정 마련

제3-2호 의안 :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대리권 증명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현 행 (변경 전)	개 정 (변경 후)	변경 목적
<b>제 21 조 (소집지)</b> ① (생략) ② (신설)	<b>제 21 조 (소집지와 개최방식)</b> ① (현행과 동일) ②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 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.	전자주총 도입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'27년 1월 시행예정)
<b>제 27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</b> ① (생략)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한다.	<b>제 27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</b> ① (현행과 동일)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한다.	전자주총 도입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'27년 1월 시행예정)
(신설)	<b>부칙 (2026.3.26)</b> 제2조 (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) 제21조 및 제27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상법 시행시기 따른 경과규정 마련

제3-3호 의안 : 독립이사제도 도입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현 행 (변경 전)	개 정 (변경 후)	변경 목적
<p><b>제 30 조 (이사의 수)</b></p> <p>① 이 회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, <u>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.</u></p> <p>② 이사는 그 일부를 <u>사외이사</u>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비상근 <u>사외이사</u>로 할 수 있다.</p>	<p><b>제 30 조 (이사의 수)</b></p> <p>① 이 회사의 <u>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,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,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.</u></p> <p>② 이사는 그 일부를 <u>독립이사</u>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비상근 <u>독립이사</u>로 할 수 있다.</p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'26년 7월 시행예정)</p>
<p><b>제 31 조의2 (사외이사 후보의 추천)</b></p> <p>① <u>사외이사</u> 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<u>사외이사</u> 후보를 추천한다.</p> <p>② <u>사외이사</u>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<u>사외이사</u>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.</p>	<p><b>제 31 조의2 (독립이사 후보의 추천)</b></p> <p>① <u>독립이사</u> 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<u>독립이사</u> 후보를 추천한다.</p> <p>② <u>독립이사</u>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<u>독립이사</u>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.</p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'26년 7월 시행예정)</p>
<p><b>제 33 조 (이사의 보선)</b>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<u>사외이사</u>가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 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 33 조 (이사의 보선)</b></p> <p>①~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<u>독립이사</u>가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 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'26년 7월 시행예정)</p>
<p><b>제 35 조의2 (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</b></p> <p>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(중략) 최근 1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<u>사외이사</u>의 경우는 4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 35 조의2 (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</b></p> <p>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(중략) 최근 1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<u>독립이사</u>의 경우는 4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'26년 7월 시행예정)</p>
<p><b>제 40 조의2 (위원회)</b></p> <p>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사외이사</u> 후보추천위원회</li> <li>2. 감사위원회</li> <li>3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</li> </ol>	<p><b>제 40 조의2 (위원회)</b></p> <p>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독립이사</u> 후보추천위원회</li> <li>2. 감사위원회</li> <li>3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</li> </ol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'26년 7월 시행예정)</p>
<p><b>제 43 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</b></p> <p>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<u>사외이사</u>이어야하고, <u>사외이사</u> 아닌 위원은 상법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<u>사외이사</u>이어야 한다.</p>	<p><b>제 43 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</b></p> <p>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<u>독립이사</u>이어야하고, <u>독립이사</u>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<u>독립이사</u>이어야 한다.</p>	<p>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'26년 7월 시행예정)</p>
<p>(신설)</p>	<p><b>부칙 (2026.3.26)</b></p> <p>제3조 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30조, 제31조의2, 제33조, 제35조의2, 제40조의2, 제43조(제4항 및 제5항은 제외)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상법 시행시기 따른 경과규정 마련</p>

현 행 (변경 전)	개 정 (변경 후)	변경 목적
<p><b>제 43 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</b></p> <p>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<u>1명</u>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 본 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</p> <p>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 <p>⑥ 사외이사가 아닌 <u>감사위원회</u>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	<p><b>제 43 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</b></p> <p>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<u>2명</u>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 본 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</p> <p>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(<u>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</u>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 <p>⑥ (삭제)</p>	<p>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26년 9월 시행예정)</p> <p>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관련 개정 상법 선제 반영 (26년 7월 시행예정)</p>
<p>(신설)</p>	<p><b>부칙 (2026.3.26)</b> 제5조(감사위원회 선·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제43조 제5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 부터 시행한다.</p>	<p>상법 시행시기 따른 경과규정 마련</p>



붙임 : 제 6 호 의안 : 임원 퇴직금 규정 일부 변경의 건

현 행 (변경 전)	개 정 (변경 후)	변경 목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4. 퇴직금의 산출</b></p> <p>4.3. 임원이 증임되었을 경우 재임 기간은 이를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직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각 직책 재임 기간별로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.</p>	<p><b>4. 퇴직금의 산출</b></p> <p>4.3. 임원이 증임되었을 경우 재임 기간은 이를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<b>직위가</b>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각 <b>직위</b> 재임 기간별로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.</p>	<p>직위 기준 명칭 변경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7. 경과초지</b></p> <p>현 임원이 2018년 12월 10일 이후 계속 연임될 경우 각 재임 기간별 정률을 승함에 있어서는 2018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그 전은 구 규정("표#2")에 따라 계산하고, 그 이후는 본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.</p>	<p><b>7. 경과초지</b></p> <p>현 임원이 2018년 12월 10일 이후 계속 연임될 경우 각 재임 기간별 정률을 승함에 있어서는 2018년 12월 10일 <b>이전</b>은 ("표#3")에 따라 <b>계산하고, 2018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</b> 기간은 ("표#2")에 따라 계산하며, 그 이후는 ("표#1")에 따라 계산한다.</p>	<p>기간별 정률 산정 기준 변경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(표#1) 임원퇴직금 정률표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5 882 665 1106"> <thead> <tr> <th>직 위</th> <th>정 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회 장</td><td>4</td></tr> <tr><td>부 회 장</td><td>3.5</td></tr> <tr><td>Global CEO, 사장</td><td>3</td></tr> <tr><td>Business Group長</td><td>2.5</td></tr> <tr><td>Business Sector長</td><td>2</td></tr> <tr><td>기타 상근임원</td><td>1.5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직 위	정 률	회 장	4	부 회 장	3.5	Global CEO, 사장	3	Business Group長	2.5	Business Sector長	2	기타 상근임원	1.5	<p><b>(표#1) 임원퇴직금 정률표(25.12.01. 이후 계산시)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97 882 1257 1077"> <thead> <tr> <th>직 위</th> <th>정 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회 장</td><td>4</td></tr> <tr><td>부 회 장</td><td>3.5</td></tr> <tr><td>사장</td><td>3</td></tr> <tr><td><b>부사장</b></td><td>2.5</td></tr> <tr><td><b>상무</b></td><td>2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직 위	정 률	회 장	4	부 회 장	3.5	사장	3	<b>부사장</b>	2.5	<b>상무</b>	2	<p>직위 기준 명칭 변경</p>				
직 위	정 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회 장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 회 장	3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Global CEO, 사장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Business Group長	2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Business Sector長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 상근임원	1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직 위	정 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회 장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 회 장	3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장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부사장</b>	2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상무</b>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(표#2) 임원퇴직금 정률표(18.12.10. 이전 계산시)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5 1211 665 1458"> <thead> <tr> <th>직 위</th> <th>정 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회 장</td><td>4</td></tr> <tr><td>사 장</td><td>3</td></tr> <tr><td>부 사 장</td><td>2.5</td></tr> <tr><td>전 무 이 사</td><td>2.5</td></tr> <tr><td>상 무 이 사</td><td>2</td></tr> <tr><td>이 사</td><td>1.5</td></tr> <tr><td>감 사</td><td>1.5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직 위	정 률	회 장	4	사 장	3	부 사 장	2.5	전 무 이 사	2.5	상 무 이 사	2	이 사	1.5	감 사	1.5	<p><b>(표#2) 임원퇴직금 정률표(18.12.11. 이후~25.11.30. 이전 계산시)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97 1211 1257 1435"> <thead> <tr> <th>직 위</th> <th>정 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회 장</td><td>4</td></tr> <tr><td>부 회 장</td><td>3.5</td></tr> <tr><td>Global CEO, 사장</td><td>3</td></tr> <tr><td>Business Group長</td><td>2.5</td></tr> <tr><td>Business Sector長</td><td>2</td></tr> <tr><td>기타 상근임원</td><td>1.5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직 위	정 률	회 장	4	부 회 장	3.5	Global CEO, 사장	3	Business Group長	2.5	Business Sector長	2	기타 상근임원	1.5	<p>(표#1) 수정에 따른 순서 변경</p> <p>구(표#1)→(표#2) 구(표#2)→(표#3)</p>
직 위	정 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회 장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 장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 사 장	2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 무 이 사	2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상 무 이 사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 사	1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감 사	1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직 위	정 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회 장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 회 장	3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Global CEO, 사장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Business Group長	2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Business Sector長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 상근임원	1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(신설)</b></p>	<p><b>(표#3) 임원퇴직금 정률표(18.12.10. 이전 계산시)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97 1514 1257 1765"> <thead> <tr> <th>직 위</th> <th>정 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회 장</td><td>4</td></tr> <tr><td>사 장</td><td>3</td></tr> <tr><td>부 사 장</td><td>2.5</td></tr> <tr><td>전 무 이 사</td><td>2.5</td></tr> <tr><td>상 무 이 사</td><td>2</td></tr> <tr><td>이 사</td><td>1.5</td></tr> <tr><td>감 사</td><td>1.5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직 위	정 률	회 장	4	사 장	3	부 사 장	2.5	전 무 이 사	2.5	상 무 이 사	2	이 사	1.5	감 사	1.5	<p>(표#1) 수정에 따른 순서 변경</p> <p>구(표#1)→(표#2) 구(표#2)→(표#3)</p>														
직 위	정 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회 장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 장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 사 장	2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 무 이 사	2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상 무 이 사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 사	1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감 사	1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

제 68 기    2025년 01월 01일 부터    2025년 12월 31일 까지  
(처분확정일 2026년 3월 26일)

제 67 기    2024년 01월 01일 부터    2024년 12월 31일 까지  
(처분확정일 2025년 3월 26일)

**NGV** **빅센타이어주식회사**

(단위 : 원)

과 목	제 68 기		제 67 기	
I. 처 분 전 이 익 잉 여 금		141,414,310,967		134,971,447,140
1. 전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	92,701,760		60,059,128	
2. 회 계 정 책 변 경 효 과				
3. 기 타 포 괄 손 익 전 입 액				
4. 보 험 수 리 적 이 익	3,211,035,239		(14,478,637,892)	
5. 당 기 순 손 익	138,110,573,968		149,390,025,904	
II. 임 의 적 립 금 등 의 이 입 액		-		-
1. 임 의 적 립 금				
III.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		141,330,065,200		134,878,745,380
1. 이 익 준 비 금	2,100,000,000		1,400,000,000	
2. 임 의 적 립 금	118,500,000,000		120,100,000,000	
3. 연 구 · 인 력 개 발 준 비 금				
4. 배 당 금	20,730,065,200		13,378,745,380	
가. 현 금 배 당	20,730,065,200		13,378,745,380	
[주당배당금(율)]				
보통주 : 당기 200원(40%)	19,397,565,200		12,501,245,380	
전기 130원(26%)				
우선주 : 당기 205원(41%)	1,332,500,000		877,500,000	
전기 135원(27%)				
IV. 차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		84,245,767		92,701,760